

# 7. 여비규정

제정일 : 1997년 4월 20일  
개정일 : 2015년 9월 7일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적용범위)** 임원, 총장 및 교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여비는 철도임, 선임, 항공임, 거마임, 일비, 숙박료, 식비로 한다.  
② 국외여비는 철도임, 선임, 항공임, 거마임, 일당체제비 준비물, 출국수수료로 한다.

**제3조(여비의계산)** 여비는 예정 여행경로에 따라 계산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 여행을 하기 곤란 할 때에는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.

**제4조(실비지급)** 특별한 임무나 사유로 말미암아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수행직원의 여비)** 통상여비 규정에 준한다.

**제6조(선도금)** 여비는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선도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국내여비

**제7조(국내여비규정)** [별표 I]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준한다.

## 제 3 장 국외 여비

**제8조(국외여비규정)** 국외여비는 [별표 II]에 의하여 지급한다.

- ① 일당체제비는 [별표 II]에 의하여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.
- ② 여비는 외환관리규정의 변동등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 (준비금 및 출국수수료)** ①준비금은 [별표 IV]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출국수수료는 출국 수속에 드는 실비를 지급한다.

